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김 현 · 박홍배
안호영 · 이춘석 · 박민규
양부남 · 박범계 · 이정문
박희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,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,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,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(補正)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방교부세율이 지난 2006년 1만분의 1,924로 조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고 고착화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방소멸 위기 심화, 복지 수요의 팽창,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, 한정된 교부세 규

모로 인하여 지역의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함.

특히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섬 또는 외딴곳이나 낙후지역 개발 등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있어 인구소멸이라는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2,124로 상향조정하고,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1호,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).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1만분의 1,924”를 “1만분의 2,124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소멸위기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
4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. 1. 해당 연도의 내국세(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,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총액의 <u>1만분의 1,924</u> 에 해당하는 금액	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만</u> <u>분의 2,124</u> -----
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·② (생략)	제7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(補正)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

<u><신 설></u> 3. (생 략)	<u>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소멸위기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</u> <u>4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</u> <u>5.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
---	---